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의안	
번호	3-22

제출년월일 : 2002. 8. 7.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성실납세의무자에게 경품등을 지급함으로써 성실납세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유발하여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의 전환으로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진재정을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3월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와 정기분 부과세목(자동차세1·2기분,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을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있는 달의 다음달 25일 까지 지방세경품추첨프로그램에 의거 추첨함(안 제3조, 제4조)

나. 경품물건 및 금액과 대상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함(안제5조)

다. 추첨은 시장이 추천한 자가 추첨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실납세의무자에게 경품등을 지급함으로써 성실 납세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유발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의 전환으로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시장은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성실 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추첨대상 및 시기) 경품추첨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월까지 자동차세 인납한 자 : 4월 25일한 추첨
2. 정기분 과세세목(자동차세1·2기분,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을 납부 기한내 납부한 자 : 납부기한이 있는 달의 다음달 25일한 추첨

제4조 (추첨방법) 추첨방법은 제3조의 추첨대상자의 납세고지서 번호를 지방세프로그램에서 추출한 후 지방세경품추첨프로그램으로 전산추첨한다.

제5조 (경품) 경품은 생활용품 또는 상품권으로 하되 동수별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추첨자) 추첨은 시장이 추천한 자가 추첨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세 무 과
입 안 자	세 무 과 장	석 명 범 ☎ 940-4220
	시 세 담 당	이 용 석 ☎ 940-4238
	담 당 자	정 삼 섭 ☎ 940-4231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시행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 유발 등의 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에 대한 자진 납세의식 전환으로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함

개 요

- 추첨시기 : 매월1회로 하되 수납 미이체분을 감안하여 익월 10일 이후 실시
- 시행시기 : 시군별로 예산확보후 시행
- 대상세목 : 취득세등 10개 세목
 - ⇒ 제외세목 (7) : 경주마권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담배소비세,도축세 도시계획세, 주행세
- 경품권 교부대상 : 납기내 신고납부를 하였거나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자
- 소요예산 : 시 군 실정에 맞도록 수립

추진계획

- 운영방법 : 시장·군수 주관하에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체 시행
- 경품권 : 별도의 경품권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번호를 경품번호로 인정
- 세목별 운영방법
 - 신고납부 세목 : 취득세,등록세,면허세(수시분), 지역개발세,주민세(균등할제외),사업소세
 - ⇒ 전월에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만 경품추첨대상으로 선정
 - 부과고지 세목 : 과세권자가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목
 - ⇒ 세목별로 규정한 납기한내에 납부한 납세의무자만 경품추첨 대상으로 선정
- 추첨 상품 및 방법
 - 상 품 : 세목별로 1~3명씩을, 기준으로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

○ 추 칙

⇒ 반드시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권자를 시장·군수 또는 성실납세자, 소년가장 등 다양하게 구성하되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추첨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 홍보방법

⇒ 납세고지서 추첨일 및 추첨대상을 기재하고 민원창구에 안내문 비치, 인터넷게시, 유선방송 등 다중에게 최대의 홍보 방안 수립 시행

○ 당첨자에 대한 조치

- 당첨여부를 우편물, 유선, 개인 이메일로 통보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 상품이 당첨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기 대 효 과

-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으로 지방세수증대와 체납요인 감소로 업무능률 향상
- 지방세납부 관심고조로 경직된 납세의식이 자율참여로 전환

행 정 사 항

- 조속한 시일내에 경품권 추첨에 다른 세부계획 및 예산 확보
 - 관할경찰서에 입회경찰관 협조를 사전협의 및 지역언론에 홍보
 - 상품권 추첨제 시행에 다른 시군 의견 제출 : 2001.2.17
- ⇒ 임의서식으로 하되 시행여부를 반드시 제출